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0나2012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

피고, 항소인 나○○ (49년생, 여자)

수원시 권선구

송달장소 수원시 권선구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2. 3. 선고 2008가소208759 판결

변론종결 2010. 6. 16.

판결선고 2010. 7.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7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노인복지회관과 사이에 보험기간 2007. 2. 27.부터 2008. 2. 27. 까지로 하여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노인복지회관 수영장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07. 9. 1. 08:30경 수원시 권선구 □□동 □□□노인복지회관 내 수영장에서 입수시 전방을 잘 살펴 타인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반대방향에서 수영중인 피해자 꽈○○과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노인복지회관 수영장 강사 유○○은 가드실에 있었고, 수영장 내에서 질서요원 내지 안전요원에 의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07. 10. 29.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 꽈○○에게 보험금

4,100,000원을 지급하고, 꽈○○과 사이에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사고의 이해관계자에게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07.

11. 7. 꽈○○에게 4,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7,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사 김○○(한양치과의원장)에 대한 2009. 4. 13. 2009. 9. 11.자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 을 제5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1, 2, 3, 제8, 9, 11, 12, 13호증,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구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노인복지회관의 안전조치 · 질 서유지의무 위반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노인복지회관 및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노인복지회관을 대위하여 이 사건 사고의 손해를 배상해준 원고에게 상법상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위 보험금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를 구상을 해 줄 의무가 있다.

나. 구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부담하는 구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피고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노인복지회관과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노인복지회관과 피고의 각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손해를 분담하여, 어느 일방이 자신의 출재로 상대방을 공동면책시킨 때에는 상

대방에 대하여 그 면책을 위하여 출재한 금원 및 기타 피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안전조치 · 질서유지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노인복지회관의 과실 내용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입수한 피고의 과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의 과실비율은 70%로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꽈○○의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꽈○○의 기재, 제7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1 내지 5,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사 김○○(한양치과의원장)에 대한 2009. 4. 13. 2009. 9. 11.자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꽈○○의 손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꽈○○의 치료비 1,036,480원, 향후 치료비 2,850,000원, 28일 가량의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등 기타 손해 140,000원 합계 4,026,480원($=1,036,480원+2,850,000원+1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꽈○○이 의치를 착용한 채 수영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가 확대된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꽈○○과 □□□노인복지회관 및 피고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부담비율은 90 : 1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꽈○○의 과실비율에 따른 과실상계를 하면, 3,623,832원($=4,026,480원\times0.9$)이 된다.

여기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꽈○○의 과실비율, 꽈○○의 건강상태 등 제방사정을 참작하면, 꽈○○의 위자료를 476,168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노인복지회관 및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꽈○○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4,100,000원(=3,623,832원+476,168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4,100,00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870,000원(=4,100,000원×0.7)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동면책일 다음날인 2007.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_____

판사 정혜원 _____

판사 김유성 _____